

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2차 본회의 (2018.3.16.)

조례·일반의안 심사 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---	1
2	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3
3	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5
4	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-----	7
5	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-----	10

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8. 3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8. 3. 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8. 3. 15.

2. 제정이유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 제4항의 개정(‘18.1.18.시행)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.(안 제2조)
 -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
- 나. 재난피해자의 지원결정을 규정함.(안 제3조)
 -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
 -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.
- 다.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 - 생활안정지원: 구호비·생계비·주거비 지원,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

- 간접지원: 농어업인·임업인·소상공인 자금 융자 및 이자 감면 등
 - 피해수습지원: 공공시설 복구, 피해자 수색 및 구조 등
- 라.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을 규정함.(안 제5조)
- 마.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위한 신고, 조사 등을 규정함.(안 제6조)
- 재난피해자는 지원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
 -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지원 가능
- 바.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·제9조)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8. 3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8. 3. 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8. 3. 15.

2. 개정이유

- 군비 보조사업에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농업인회관에 개수·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군의 기반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·보수비 지원근거를 신설함.(안 제4조 제1항제10호, 별표)
 - 지원을 100퍼센트 이내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농업인회관의 개·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군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
- 거창군 농업인회관의 개·보수사업에 필요한 군비지원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상의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, 지방재정법의 지원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설명이 필요함.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8. 3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8. 3. 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8. 3. 15.

2. 개정이유

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시행지침에 따라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인용법령 삭제하여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.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.(안 제4조)
- 다.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화 함.(안 제6조)
- 라.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보완함.(안 제9조제2항)
- 마. 귀농인·귀농단체 지원사업 중 인구증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함.(안 제15조제1항제2호)

- (현행)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
(변경) 귀농세대에 영농정착금 지원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‘17년 3월 개정된 『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5조 및 시행지침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·신축·수리·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8. 3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8. 3. 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8. 3. 15.

2. 배경 및 목적

- 거창 지역단위에서의 풍수해 특성을 고려 풍수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키고 풍수해 발생 시 지역과 국가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 수립 필요함.
-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요소를 정의하고,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함은 물론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거창군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, 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⇒ **근거: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(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)**

3. 계획개요

- 가. 계획명: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
- 나. 계획의 범위

- 공간적 범위: 거창군 전 지역(A=803.17km²), 하천 238개소
- 시간적 범위: 10년(기준연도 2018년, 목표연도 2027년)
- 대상 재해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대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

다. 기초조사 현황

- 일반현황: 행정, 인문, 자연(국가하천 1개소, 지방하천 42개소, 소하천 195개소), 방재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, 저류지, 우·오수 관거, 사방시설, 저수지, 세천 등)
- 과거 풍수해발생 현황조사(2006년~2015년)
- 주민설문조사 및 후보지 현장조사(321개소)
- 관련계획 조사: 방재관련 계획, 토지이용관련 계획, 시설정비 종합계획 등

라. 위험지구 선정기준

- 시·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(행안부고시 제2017-1호)
- 기초현황조사(주민설문, 현장조사)를 통한 피해 발생지역 반영
- 개별법에 의한 지정된 위험지구 검토
- 시설정비종합계획 미수립 구간 반영
- 재해유형별 정량적 지표 마련 및 적용(면적, 자산, 인구수, 재해취약자수, 건물수, 유동인구, 불편도 등)

바. 수립절차: 관계기관 협의, 공청회, 지방의회 의견청취, 시·도지사 협의, 행정안전부장관 승인

사. 소요예산: 652,190천원

4.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
가.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수행

- 타 분야 활용 및 부분별 조정역할, 투자우선순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시행

나. 국·도비(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) 및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확보 근거 마련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계획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(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)에 따라 5년마다 시·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 및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국·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안을 수정·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금회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풍수해 위험요인을 조사·분석하고,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대책 및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최상위 방재 종합계획으로 풍수해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수정안 요지: 없음

9. 심사결과: 찬성의견

※ 부대의견: 집중호우시 거창읍 죽전마을회관 주변 내수재해 위험지역과 거창읍 장팔리 웅곡천~김천리 위천천 구간 하천 재해(토사퇴적) 위험지역을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 반영

10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8. 3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8. 3. 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8. 3. 15.

2. 제안이유

-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신원면소재지정비 사업으로 설치한 주민 교육·문화·복지시설인 사랑누리센터 관리·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한국수자원공사의 합천댐주민주변 지역 지원사업비(민간자본보조)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.

3. 추진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: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
- 사업자: 신원면 생활체육협의회(대표: 엄홍주)
 - ※ 신원면소재지 정비사업 운영위원회
 - ※ 시공자(한국수자원공사)가 직접시행 후 인수인계
- 발전용량: 98.8kW
- 사업비: 280백만원(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주민주변지역 지원사업비)

나. 그간 추진사항

- 2017. 10월: 합천댐주민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
- 2018. 1월: 합천댐주민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

다. 공작물설치 대상 재산의 표시(토지소유자 거창군)

위 치	지적(m ²)	태 양 광 설치면적	용 량	사용허가신청자
합 계	4,706.1	1,980	98.8kW	
신원면 과정리 945-1	496.3	496.3		신원면 생활체육협의회
신원면 과정리 946-1	274.9	274.9		
신원면 과정리 947-1	3,934.9	1,208.8		

라. 향후계획

-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
 - 허가기간: 허가일로부터 10년간
 - 연간 사용료: 775,460원(부가세 포함)
 - ※ 산출내역: 재산평가액(공시지가×부지면적×요율5%)×50/100감면×1.1(부가세)
 - 철거(원상복구)비용: 6,000,000원 정도(보증보험보증서 징구)
 - ※ 산출내역: 태양광설치 98.8kW 철거공사 설계비 산출
- 2018. 3월: 개발행위(공작물설치) 등 개별법 허가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신원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사랑누리센터 관리·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한국수자원공사의 합천댐주민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,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“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러나 「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」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 동의에 필요한 법적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,
- 또한 공작물설치 예정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신원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로서,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「농어촌 정비법」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등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국비보조사업 지원 부처(농·식품부) 및 원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후 태양광발전시설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,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